

행정자치부 훈계요구

제 목 법원의 취소판결에 따른 재처분의무 지연이행

기 관 명 경상남도

관 계 기 관 밀양시

관 련 자 ① 밀양시 ○○과 지방○○○○○ ○○○
② 밀양시 ○○과 지방○○○○○ ○○○
③ 밀양시 ○○과 지방○○○○○ ○○○

내 용

지방○○○○○ ○○○은 2016. 1. 1.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지방○○○○○ ○○○는 2016. 1. 1.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지방○○○○○ ○○○은 2015. 1. 1.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각각 ○○과에서 감독책임자, 실무책임자, 실무담당자로서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과 관련한 취소판결에 따른 재처분 업무를 처리하였다.

밀양시에서는 2015. 10. 5. 민원인(○○○)으로부터 밀양시 ○○면 ○○리 ***-* 답 2,262㎡ 지상에 연면적 1,210.2㎡의 소를 키우기 위한 동·식물 관련시설을 신축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신청 등을 포함한 건축허가 신청을 받고 2015. 11. 27. 주변환경 및 경과과의 부조화 등의 사유로 불허가처분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민원인은 2015. 12. 18. 창원지방법원에 위 불허가처분을 취소해 달하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관서에서는 2016. 6. 16. 위 법원으로부터 불허가처분은 처분의 합리적 근거가 부족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는 취소판결 결과를 송달받았으며 위 판결은 2016. 7. 1. 그대로 확정되었다.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르면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하고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이하 ‘재처분의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2015. 8. 11. 법률 제134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에 근거하여 작성된 ‘민원사무 처리기준표’에 따르면 건축허가업무 처리기간은 14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서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취소판결 확정일로부터 민원사무 처리기간 내에 그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건축허가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위 관서에서는 2016. 7. 1. 건축불허가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된 이후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 등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가 정부합동감사 사전조사기간(2016. 10. 19. ~ 10. 28.) 중 이에 대해 지적을 받은 후에야 관련 법령 검토를 거쳐 2016. 10. 24. 건축허가를 하였다.

그 결과 민원인은 취소판결을 받았음에도 신속한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였다.

조치할 사항 밀양시장은

앞으로 취소판결에 따른 재처분 의무를 지연하여 민원인이 신속한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고 위 관련자를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